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6. 2.
행 정 위 원 회

1. 審 查 經 過.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2월 3일 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6년 2월 17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2006년 2월 20일
제11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

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정진)

가. 개정이유

- 정부 및 국회에서 수요자중심의 법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5년 1월 1일 부터 한글맞춤법에 맞추어 법령제명을 띄어쓰기로 함에 따라,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정부방침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제명 띄어쓰기 기준 및 절차를 새로 정하여 이를 시행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한글맞춤법에 의한 제명 띄어쓰기
- 제3조제2항 및 제7조 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한다.

다. 참고사항

- 관련근거 : 한글맞춤법 시행(2005. 1. 1)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합의사항 : 필요없음
- 입법예고 : 생략
- 사 유 :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규칙으로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내부 사무처리에 대한 변경임

3. 專 門 委 員 의 檢 討 報 告 要 旨 (專門委員 김찬재)

- 정부 및 국회에서 수요자 중심의 법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한글맞춤법에 맞추어 법령제명을 띄어쓰기로 함에 따라 우리구에서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4. 審 查 結 果 : 原 案 可 決